

## 강원도립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자 예우규정

(제정) 2006-06-29 규정 제170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출연하신 분에 대하여 교내·외의 각계 인사 및 동문들에게 그 뜻을 기리는 예우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5>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일금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및 부동산을 출연한 자.
2.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기탁하기로 한 자.
3.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탁하기로 한 자.

제3조(후원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① 성금증서 및 감사서신 :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 ② 감사장 : 일금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및 부동산을 출연한 자.
- ③ 감사패 : 일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및 부동산을 출연한 자.
- ④ 특별예우
  1. 기여정도에 따라 건물명칭 또는 건물내 특정한 장소에 아호 및 지정된 명칭 등을 부여하여 영구 보존한다.
  2. 그 외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별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3. 특별예우에 관하여는 대학발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4. 발전기금에 동참한 분의 정성과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강원도립대학교의 역사에 기록을 남겨 영구 보존한다.<개정 2016.4.25>

제4조(제식 및 규격) 감사장 및 감사패의 제식과 규격은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 문안은 공헌의 내용을 표시하되 추천기관의 문안을 참작한다.

제5조(추천 및 요청) ① 단위기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대학발전위원회 사무처에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단위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처에서 이를 추천한다.

제6조(제작비용) 특정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 또는 이와 상당한 출연에 대한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제작비용을 추천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학교 전체 발전을 위한 출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한다.

부 칙(2006.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